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시행에 따른 대리처방 관련 안내

1. 관련

- 가. 보건의료정책과-1246(2020.02.22.)호(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 나.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32695(2020.12.14.)호(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 다. 보건의료정책과-5056(2021.10.19)호(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2. 의료법 제17조의2에 의거, 코로나 위기대응 '심각'단계에 따라 '20.2.24일부터 시행한 대리처방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21.10.19 보건복지부 공고)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을 귀 기관의 소속기관·지부·회원, 관내 의료기관·약국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17개 시도지사장, 전국 보건소장, 6개 보건의약단체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급여관리실), 13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대표

주무관 **한수원** 서기관 **이준미** 보건의료정책과 전결 2021.10.20.
장 **김국일**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076 (2021. 10. 20.)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415 팩스번호 044-202-3941 / hansw24@korea.kr / 비공개(5)